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2005. 7. 14

HR 미래인력연구원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미래인력연구원(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2005년 수행한 연구 결과 발표문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이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임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일시: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 2층 마로니에룸

주최: 미래인력연구원

후원: 보건복지부

 미래인력연구원

진행순서

인사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진규 미래인력연구원장

발표

1.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연구 개요
설동훈(전북대)
2.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이혜경(배재대)·김현미(연세대)
3. 혼인생활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한건수(강원대)
4.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윤홍식(전북대)·설동훈(전북대)
5.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주영수(한림대)
6. 일본과 대만의 국제결혼이민자 정책
임경택(전북대)·김윤희(동덕여대)·설동훈(전북대)

토론

1.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
3.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4.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홍승권(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 임상교수)

종합토론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1
II. 세계체계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3
III.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5
IV. 결혼생활	9
V.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13
VI.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16
VII.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19
VIII.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20
IX. 정책 제언	21

표 차례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4년	1
<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2
<표 3> 결혼적령기 연령대별·도농별 성비, 1960~2000년	4
<표 4>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7
<표 5>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7
<표 6>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10
<표 7> 결혼유형별 부부폭력	10
<표 8>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10
<표 9>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12
<표 10>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13
<표 1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14
<표 12> 의료보장의 형태	16
<표 13>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17
<표 14> 낙태 경험 유무	18
<표 15> 낙태 사유	18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설동훈 · 김윤태 · 김현미 · 윤홍식 · 이해경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4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1990-2004	5,568,489	197,634	3.5	128,762	2.3	68,872	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2005년 4월

(단위: 명, %)

출신국	외국인 아내		등록외국인		20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6,912	100.0	55,964	100.0	10,948	100.0
한국계 중국인	31,739	47.4	24,681	44.1	7,058	64.5
중국	11,577	17.3	9,721	17.4	1,856	17.0
일본	7,097	10.6	7,076	12.6	21	0.2
필리핀	5,457	8.2	3,692	6.6	1,765	16.1
베트남	4,675	7.0	4,592	8.2	83	0.8
태국	1,364	2.0	1,340	2.4	24	0.2
몽골	1,072	1.6	1,055	1.9	17	0.2
러시아	950	1.4	933	1.7	17	0.2
기타 구소련, 동유럽	1,190	1.8	1,161	2.1	29	0.3
아시아 저개발국	595	0.9	549	1.0	46	0.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5	0.1	28	0.1	7	0.1
중남미	140	0.2	124	0.2	16	0.1
기타 선진국	1,021	1.5	1,012	1.8	9	0.1

자료: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2005 계산.

본 연구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집계자료(aggregate data) 분석을 통한 모집단 성격 파악,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송출국과 국내의 결혼중개회사 종사자 심층면접, 비교 사례로서 일본·대만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정책연구,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조사의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각각 1,000명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 1,082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였는데, 그 중 남편만 응답한 137개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945가족의 응답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에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그들과 한국인 남편, 시댁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송출국에서의 현지 신부 모집과정, 중개업자 실태, 현지 여성의 한국행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6일에 중국 선양(深阳, Shenyang)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서 면접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수는 6명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24개 결혼중개업체를 대

상으로 결혼중개업소의 실태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였다.

II. 세계체제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나라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민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 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을 살펴보았다.

① 세계체제적 조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의 저개발지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성’과 ‘전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② 송출국의 상황: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미국·일본·한국·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국민의 해외송출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③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남아선호의 결과 낙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법적 측면으로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일시 방문 외국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표 3> 결혼적령기 연령대별·도농별 성비, 1960~2000년

연령대	연도	전국	도시	농촌	
				읍부	면부
20~24세	1960	106.50	100.49	101.63	110.23
	1970	106.06	92.81	104.94	125.80
	1980	104.12	89.49	109.72	151.61
	1990	109.15	96.55	124.37	187.70
	2000	111.44	105.84	122.66	161.82
25~29세	1960	92.00	83.10	87.46	97.31
	1970	99.04	99.63	93.04	99.57
	1980	99.98	98.00	97.87	108.05
	1990	99.46	96.49	99.23	123.15
	2000	100.87	98.46	98.61	130.72
30~34세	1960	87.68	85.96	85.12	89.05
	1970	102.25	109.05	100.82	95.70
	1980	105.53	105.79	106.15	104.44
	1990	103.77	102.70	107.09	109.43
	2000	102.13	100.61	102.80	117.60
35~39세	1960	94.29	99.54	93.50	91.72
	1970	97.44	103.77	98.59	91.86
	1980	102.83	107.34	103.66	92.40
	1990	106.13	105.72	111.55	105.60
	2000	102.32	100.16	112.65	114.21

주: 성비는 각 연령대 여성 인구를 100으로 한 값에 대한 비(ratio)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nso.go.kr>.

④ **국제결혼 중개자:**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매우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알선하는 것을 억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Ⅲ.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① **인구학적 배경:**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그리고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였다. 그리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남편이 10살 이상인 경우가 34%로 이러한 극심한 연령 차이는 특히 베트남 여성(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에게 심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 질 경우 남편이 10세 이상이나 연상인 경우가 60%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학력 수준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부부 모두 약 15% 정도였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이었고, 중국동포는 주로 도시에 그러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혼인상태를 통해 살펴본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정도는 중국한족(28%)에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동포(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본 조사에 집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45%로 나타나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②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그들의 입국시기를 통해 국내로의 결혼이주는 1980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2년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며,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들의 입국이유는 결혼이주와 취업 및 방문 등의 이주가 77%와 23%로 나타나, 물론 혼인을 위한 입국이 가장 많지만(3/4),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2/3 정도는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주로 친구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음에 비해 중국동포는 혈연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③ 국제결혼 과정: 그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한 경우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에게, 직접 만나는 방식은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종교단체를 통한 방식은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주로 베트남, 몽골 및 구소련 여성에게 많았다. 소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는가는 국제결혼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일수록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이는 주로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아니면 부부 모두(14%)가 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45%)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될 사람과 결혼 전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도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서, 특히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의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서 주로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그리고 몽골(21%)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1/4~1/5 정도였다. 한편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30% 정도가 재혼이었다.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73%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표 4>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에 대해들은 이야기 사실 여부

(단위: %, 명)

	소개 (460)	결혼중개업체 (119)	종교단체 (142)	직접 만났음 (150)	기타 (52)
아주 정확히 일치	26.3	27.7	23.9	34.0	25.0
대체로 일치	33.9	16.8	31.0	36.7	30.8
보통	18.9	11.8	28.2	14.0	23.1
별로 일치하지 않음	12.8	11.8	7.7	13.3	11.5
전혀 일치하지 않음	8.0	31.9	9.2	2.0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남편을 만난 방법별 결혼 전 남편 이야기 중 사실과 다른 것

(단위: %, 명)

	소개 (217)	결혼중개업체 (67)	종교단체 (44)	직접 만났음 (67)	기타 (21)
남편 가족관계	29.7	25.0	31.4	20.4	30.0
남편 재산	34.2	54.4	26.5	35.7	10.5
남편 직업	33.3	43.9	50.0	25.0	10.5
남편 학력	19.2	17.3	38.9	12.5	5.6
남편 소득	47.7	49.2	45.9	32.1	10.5
남편 건강상태	24.7	40.4	39.4	4.1	16.7
남편 성격	57.1	59.7	56.8	35.8	57.1
기타	35.0	25.0	41.2	54.2	69.2

④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본국에서 본인이 주요한 생계 부양자였냐는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가에 달려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혼일수록 본인이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91%)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⑤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는 2005년 5월 내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1%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9% 정도 높은 셈이다. 그들의 종사 직업은 절반 정도(52%)는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14%는 공장에서 그리고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도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은 이 외에도 도시에서는 공장노동자로 농촌에서는 단순노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주로 노동시간이 긴 서비스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70%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중국동포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73%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들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140만원이며, 중국동포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10만원 정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동포가 더 장시간 일하기 때문으로, 그들의 근로소득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 원 정도이며, 중국동포의 시간당 임금은 1만2천원으로 나타나 출신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교사 등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 원 정도로 중국동포보다 약간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 교육비 충당(17%)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21%)' '자녀 양육부담(18%)' 및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이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자녀 양육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였다. 그리고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93%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 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다.

IV. 결혼생활

① **혼인유형과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 국제결혼 가족은 초혼가족이 62%로 일반적인 한국가족(초혼 77.7%, 재혼 22.3%, 2002년 기준)에 비해 재혼가족 비율이 높다. 가구구조의 특징으로 부부가족(39%)의 비율이 높고,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19.6%)도 높다. 가족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해야하며, 남편도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100점을 완전히 동의한다고 보면, 각각 85점, 82점 정도로 다른 가족가치문항에 비해 높다. 일본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보다 이혼, 노부모부양, 시댁식구에 대한 배려에서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는 몽골과 중국한국 부인들이 높게 나타난다.

② **부부관계:** 국제결혼 부부 중 90%이상이 대화시 한국어를 쓰며, 필리핀인 부인의 경우를 53%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고 있다. 베트남인 부인들의 경우 9% 정도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한다. 베트남, 태국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부인이 평가한 남편들의 부인 나라 언어 실력은 극히 부진하다.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 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하다.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이다.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 중 41% 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는 8%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 부인들보다 부부싸움 빈도가 적은 편이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를 많이 지적한다. 부부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모국친구(30%)를 가장 많이 지적하며, 두 번째가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다(19%)이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정도 된다. 특히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 가운데 부부불화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 40%나 되었다.

<표 6>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단위: %, 명)

	전체 (921)	기혼 (755)	별거 (76)	이혼 (38)	동거 (32)	사별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계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42.1	15.6	20.0

<표 7> 결혼유형별 부부폭력

(단위: %, 명)

	전체 (930)	둘 다 초혼 (575)	남-초혼/여-재혼 (74)	남-재혼/여-초혼 (127)	둘 다 재혼 (155)
모욕적인 말	31.0	23.5	43.8	37.8	47.1
때리겠다고 위협	18.6	11.8	27.4	28.6	31.6
물건 던짐	23.7	18.8	27.0	31.0	34.2
세계 밀기	13.7	7.7	21.9	22.8	24.5
손발로 구타	13.3	7.1	21.9	27.8	20.0
성행위 강요	13.9	8.0	26.0	27.0	19.4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4.5	20.5	21.4	12.9

<표 8> 여성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단위: %, 명)

	전체 (948)	중국동포 (449)	중국한족 (164)	일본 (101)	필리핀 (78)	베트남 (66)	태국 (20)	몽골 (15)	구소련 (30)	기타 (25)
모욕적인 말	30.5	25.7	57.3	29.0	20.8	9.1	47.4	26.7	26.7	26.9
때리겠다고 위협	18.4	15.1	41.7	13.9	11.7	9.1	15.8	20.0	6.9	4.0
물건 던짐	23.5	19.2	37.8	34.7	14.3	4.5	30.0	20.0	26.7	34.6
세계 밀기	13.4	11.6	25.8	8.0	13.0	1.5	21.1	13.3	17.2	8.0
손발로 구타	13.1	12.1	21.5	14.0	6.5	6.1	10.5	13.3	13.8	12.0
성행위 강요	13.8	12.3	31.3	11.0	9.1	4.5	5.3	.0	3.4	4.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3	6.9	28.0	2.0	7.7	1.5	.0	.0	3.3	4.0

부부폭력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이다.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 경험율이 높는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베트남인 부인들은 모든 형태의 부부폭력에서 경험율이 10%미만으로 가장 낮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20%), 신고할 줄 몰라서(14%), 경찰 문제해결 능력 의심(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을 든다.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14%정도이며, 이용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20~40%정도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거의 30~50%였다.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34%이며,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문제, 체류자격 유지 문제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㉓ 자녀관계: 전체 응답자 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가 있는 사람이 41%이다. 한국인과 결혼이 재혼인 여성(229명)중 88.2%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 자녀와 살고 있는 사람은 16.6%이다. 그리고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자녀를 데려올 의향이 있는 사람은 75.4%(144명)이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45%)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와 자녀관계를 보면, 응답자중 64.3%가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중국 동포나 한족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 빈도나 자녀 숙제 돌봐주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전처 소생의 자녀하고만 사는 경우 자녀들과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되며, 자녀의 숙

제를 거의 못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된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0~70%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 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다. 태국과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일본인과 중국 한족 어머니들은 낮은 편이다.

④ 부모·친척관계: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적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전화하는 경우가 76%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통화한다는 응답자들도 6.5%이다. 특히 중국 동포들이 다른 나라 출신 여성들보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더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여가활동을 보면, 적어도 한 달에 1~2회 이상 회식을 한다는 가족이 57.2%로 그 빈도가 다른 가족여가활동(예, 가족동반 친목모임, 문화활동, 가족여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족문화활동은 도시와 농촌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국제결혼 가족은 적어도 한 달에 1~2회 이상 문화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23%정도 되는데 비해, 농촌 가족은 12~13% 정도이다.

<표 9> 여성 결혼이민자 월 가구소득 구성

가구소득	전체 (945)		중국 동포 (340)		기타 외국 (605)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근로소득	966,009	64.8	1,143,340	67.7	805,845	61.5
본인	(415,677)	(27.9)	(507,629)	(30.0)	332,627	(25.4)
남편	(529,773)	(35.5)	(616,353)	(36.5)	451,574	(34.5)
기타가구원	(20,559)	(1.4)	(19,357)	(1.1)	1,644	(1.7)
이전소득	13,563	0.9	5,155	0.3	20,832	1.5
정부지원금	(7,555)	(0.5)	(4,864)	(0.3)	9,986	(0.8)
친지·민간	(6,008)	(0.4)	(651)	(0.0)	10,847	(0.8)
자본소득	24,894	1.7	23,881	1.4	25,808	2.0
사회보험소득	15,156	1.0	15,508	0.9	14,839	1.1
기타소득	470,758	31.5	501,266	29.7	443,203	33.8
총 가구소득	1,490,380	100.0	1,689,511	100.0	1,310,528	100.0

V.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① **경제적 생활실태**: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소득원도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비국적자가 포함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서 공적복지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국적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어머니로 둔 (한국국적인) 아동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지난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단위: %, 명)		
	전체 (907)	중국 동포 (302)	기타 외국 (605)
거의 매달	4.5	2.8	6.1
서너 달 정도	2.6	2.8	2.4
한두 달	8.4	5.0	11.5
거의 없음	84.5	89.5	80.0
계	100.0	100.0	100.0

또한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가 된다는 사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4.3%에 달해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만의 내용을 보면 화장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 되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주거문제의 심각성

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본적인 주거 및 식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해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첫째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적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행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그 만족도가 평균이상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앞서 제시한 13개 모든 항목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단위: %)					
	전체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계비 지원	10.2	89.8	3.9	96.1	16.7	83.3
의료비 지원	11.6	88.4	7.3	92.7	16.2	83.8
물품 지원(식료품, 의류 등)	7.2	92.8	2.9	97.1	11.8	88.2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등)	5.9	94.1	3.6	96.4	8.4	91.6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16.3	83.7	9.9	90.1	23.3	76.7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2.0	88.0	4.5	95.2	19.7	80.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2.9	87.1	7.2	92.8	18.8	81.2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등)	9.7	90.3	8.1	91.9	11.5	88.5
약물(알코올)상담	4.4	95.6	1.6	98.4	7.4	9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7.5	92.5	6.6	93.4	8.4	91.6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8.6	91.4	2.4	97.6	15.0	85.0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8.5	91.5	3.0	97.0	14.3	85.7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	22.4	77.6	7.6	92.4	36.6	63.4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실태: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빈곤 하에 있는 가구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게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하였듯이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수급에서 탈락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생활실태는 더욱 심각한데 탈락자의 절반이 넘는 55.0%가 수급탈락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설령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문제를 일자리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정했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경우등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춘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대상이 되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파악해보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급여액 기준 최소예산은 연간 42억 원이고, 최대치는 8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했을 경우 소요예산은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7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급여에 의료 및 교육급여를 합산한 경우 최소예산은 64억 원이고, 최대 예산 규모는 1,2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비수급 여성 결혼이민자(비귀화)가구에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귀화자 중 수급자 비율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38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VI.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 **기존 의료보장체계의 적극적 활용과 서비스이용 장벽의 제거:**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형태에 대한 질문결과에서도,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대담하기도 하였다.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육과 홍보 등 보다 1차적인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외에도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제기된 현안을 해소하면서 정책적 장벽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의료보장의 형태

(단위: %, 명)

	전체 (544)	도시		농촌	
		중국 동포 (216)	기타 외국 (203)	중국 동포 (52)	기타 외국 (73)
직장가입건강보험	28.3	26.0	33.6	36.2	15.0
지역가입건강보험	43.3	44.2	37.9	46.8	53.0
의료급여 1종	3.1	0.0	4.4	1.9	9.4
의료급여 2종	1.7	1.5	0.7	1.9	5.1
아무 것도 없다	23.6	28.3	23.4	13.2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3>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전체 (702)	도시		농촌	
		중국 동포 (293)	기타 외국 (246)	중국 동포 (66)	기타 외국 (96)
치료 포기한 적 있음	18.0	17.4	19.7	14.9	17.2
없음	82.0	82.6	80.3	85.1	8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0%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의 경우는 '접근성'의 제약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일 중단'의 경제적 부담과, '진료대기'의 시간소비 등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일단 '치료비' 지원방안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제제기들까지 포함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적인 고려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질병관리방안 마련: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서이었다. 그 중에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 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전체를 합하면 8.1%로서, 단순히 유병률로만 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5~6배정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과적 영역(우울증은 치료 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과 생활습관병 영역(고혈압은 치료 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 부인과 질환 영역(자궁 근종은 35.4%의 수진율을 보임)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질병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정신·심리적 측면의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일단,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우울'증상, '불안'증상, 모두의 경우에서 불완전한 결혼상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정·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낙태 경험 유무

(단위: %, 명)

	전체 (825)	도시		농촌	
		중국 동포 (324)	기타 외국 (288)	중국 동포 (75)	기타 외국 (138)
있다	20.2	22.2	21.1	19.1	14.0
없다	79.8	77.8	78.9	80.9	8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5> 낙태 사유

(단위: %, 명)

	전체 (198)	도시		농촌	
		중국 동포 (94)	기타 외국 (64)	중국 동포 (14)	기타 외국 (26)
자연유산	29.0	25.8	31.3	48.2	24.7
남편반대	4.3	3.8	4.7	0.0	7.2
가족 반대	1.6	1.9	0.0	0.0	4.9
가족 계획상	21.0	19.1	29.0	7.2	15.5
자녀수가 많아서	2.8	1.4	5.9	3.6	0.0
혼혈아 걱정	3.4	1.9	0.0	0.0	18.6
본인의 건강 이유	5.9	6.0	3.2	26.6	1.0
태아의 건강 이유	5.6	6.4	3.2	7.2	7.6
기타	26.5	33.6	22.7	7.2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모성 보호를 위한 연구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 들에게는 자연유산의 빈도도 높았다(13%를 상회함). 또한, 아직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선친성 기형아를 가졌던 경험이 2.7%에 있다고 하는 등, 향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중대하고도 예민한 모성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II.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2003년 현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74만여의 전체결혼 건수 중 4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제결혼은 자유연애가 아닐 경우 대부분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서는 인터넷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나 인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이나 형태는 업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다만, 국제결혼에 수반되는 입국수속,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업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법 위반'이 되고,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이러한 국제결혼 이민자들에 대해 일본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그 수혜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수혜대상의 조건 혹은 자격에 관한 우선순위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재일코리언과 닛케이진 등과 같은 영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순이며,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 국적법상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되고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자 및 정주자, 정규입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

용은 크게 사회보험, 생활보장 등으로 나누어지고, 외국인이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할 때 담당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그 외국인이 실제로 살게 되는 지역사회의 임원(예를 들면, 구장이나 촌장)들이 다시 그 내용을 숙지시킨다.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회수당으로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일본 국내의 사회복지법, 주택보장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된다. 이 사회보험은 지출의 증가와 수혜자가 느끼는 불공평감이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이는 국가 혹은 정부가 곤궁한 외국인 구제의 제1차적 책임을 지방공공단체에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급부는 난민조약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급부를 보장한 것이거나 혹은 단순히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문화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사회복지의 일본사회자체의 변화추구,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의 충실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서비스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연수, 시민대상 타문화이해 강좌 등이 있다.

VIII.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대만의 결혼이민자 중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구성에서는 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적부여에는 갈수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에서는 국민대우와 같은 완전보장을 추구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조

건이 부여되며, 취업 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이 보장되고 있다.

사회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이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저소득가구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 조치 및 심신장애자 복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의 설립과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위주가 되어 생활적응, 교육기회의 제공,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록 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X. 정책 제언

㉠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진도되어 있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출국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㉒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들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예컨대 각 시도, 시군구청의 가족정책 담당관)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셋째,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그들의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침서 등을 만들어 일선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또는 유사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하다.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익힘과 아울러, 기술과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체 조직을 결성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좋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야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③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논의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